

의안번호	제 365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3년 8월 29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65
----------	-----

제출연월일 : 2023년 8월 29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충청북도를 상징하는 도기·문장(철인)·휘장·심벌마크 등 주요 상징물의 교체와 충청북도 브랜드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반영하고,
- 상징물의 사용 승인 등에 따른 관련 서식을 현실에 맞게 변경·신설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변경(안 제명)
 - 「충청북도 상징물관리조례」 → 「충청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 상징물의 교체에 따른 사항 반영(안 제3조)
 - 도기: 별표 1
 - 문장(철인)·휘장: 별표 2
 - 심벌마크: 별표 3
- 충청북도 상징물의 적극적인 홍보 및 확산 노력 규정(안 제6조)
- 충청북도 브랜드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 휘장 증여대장 및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등 서식 정비
(안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

3. 의안전문 : 불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 임

5. 관계법령 발취 : 불 임

6. 비용추계서 : 불 임

충청북도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상징물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상징물관리조례”를 “충청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기와 문장”을 “도기, 문장, 심벌마크”로 한다.

제2조 중 “이라 함은 충청북도(이하“도”라 한다)”를 “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로, “휘장”을 “휘장, 심벌마크”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도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기: 별표 1
2. 문장(철인)·휘장: 별표 2
3. 심벌마크: 별표 3
4. 캐릭터: 별표 4
5. 도조(道鳥): 까치
6. 도화(道花): 백목련
7. 도목(道木): 느티나무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표창장,”을 “표창장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도관리”를 “도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가진자”를 “가진 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회장을”을 “제3항에 따라 회장을”로, “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장증여대장”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장 증여대장”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상징물의 관리 등)”을 “(상징물의 관리 및 홍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다”를 “하며, 상징물의 홍보 및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징물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각 호”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이용 하고자”를 “이용하고자”로, “상징물사용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고 그”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상징물사용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고 그”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제6조”로,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 승인”을 “사용승인”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납부 하여야”를 “납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브랜드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 브랜드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상징물 체계 및 각종 브랜드 관리에 관한 사항
2. 효율적인 브랜드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및 도민참여 방안
3. 국내외 홍보 및 민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관리실장

2.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 2명 이내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 소속 공무원

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상징물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된다.

⑥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하고, 공동으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⑦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관리실장인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
· 자문이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11조 중 “제8조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상표법,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표 4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충청북도 도기



- 바탕 : 충북 흰색
- 마크 : 충북 자색(상단, 치웃)
충북 청록색(하단, 비읍)
- 로고(글씨) : 충북 감색

충북 자색 Chungbuk Purple

C65 M80 Y0 K0
R114 G69 B152
Pantone 2088 C

충북 청록색 Chungbuk Blue Green

C80 M0 Y30 K0
R0 G174 B187
Pantone 3115 C

충북 감색 Chungbuk Dark Blue

C100 M80 Y0 K60
R0 G22 B85
Pantone 288 C

※ 도기의 규격 및 마크·로고의 규격은 위 규격을 표준으로 하되, 필요시 길이(가로)와 너비(세로)의 비례에 따라 그 규격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2]

문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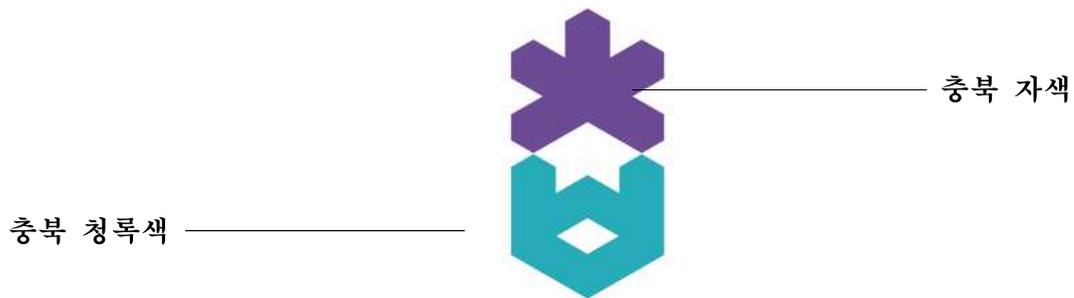


철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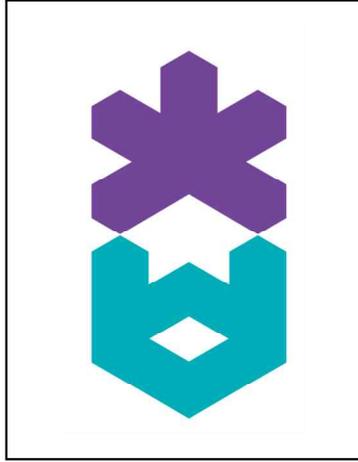
※ 문장과 철인은 도기의 예에 의하며, 색상과 규격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 적의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다.

휘 장



※ 휘장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 모양(색상)과 규격을 적절하게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심벌마크



<심벌마크 의미>

1. 심벌마크는 충북의 초성인 ‘치웃’과 ‘비읍’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충청북도의 명칭에 대한 정체성을 담고 있음
2. 좌우대칭인 형태와 함께 충북을 이루는 각 분야가 중심을 향해 균형감 있게 뻗어나가며 성장하는 충청북도의 미래비전을 구현함
3. ‘치웃’과 ‘비읍’ 사이의 화살표는 충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을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비상하는 충북의 위상을 형상화함
4. 심벌마크를 구성하는 획수는 총 11개로, 서로 다른 매력을 지닌 충북의 11개 시·군이 균형있게 발전하고 소통하는 의미를 내포함
5. 형태 중 ‘츠’은 하늘을 향해 뛰어오르는 도민, ‘비’은 충북의 호수를 상징하여 충북의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도민의 모습을 형상화함

<색상 기준>

상단의 자색 ‘치웃’은 충북의 성장가능성과 미래지향성 그리고 포용성을 표현하며, 하단의 청록색 ‘비읍’은 충북의 호수를 상징하여 친환경·지속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음

충북 자색 (Chungbuk Purple)		충북의 성장가능성, 미래지향성, 포용성	PANTONE 2088C R114 G69 B152 C65 M80 Y0 K0
충북 청록색 (Chungbuk Blue Green)		충북의 호수, 친환경·지속가능성	PANTONE 3115C R0 G174 B187 C80 M0 Y30 K0

[별표 4]

캐릭터 (마스코트)

(1) 기본형



(2) 내용설명

“고드미”와 “바르미”는 21C 주역이 될 남·녀 어린이를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친근한 모습으로 형상화하여 충북과 충북인을 새롭게 표현한 것이다.

예로부터 중원문화의 발상지요, 애국충절의 고장인 충북전래의 선비정신과 기상을 바탕으로 21C 새 시대를 “올곧고”, “바르게” 개척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충청북도 상징물관리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를 상징하는 <u>도기와 문장</u>,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충청북도(이하“도”라 한다)를 상징하는 도기, 문장, <u>휘장</u>,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p> <p>제3조(상징물의 종류) 도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도 기</u> : 별표 1 2. <u>문장(철인)· 휘장</u> : 별표 2 3. <u>캐릭터</u> : 별표 3 4. <u>도조(道鳥)</u> : 까 치 5. <u>도화(道花)</u> : 백 목 련 6. <u>도목(道木)</u> : 느티나무 	<p><u>충청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u></p> <p>제1조(목적) ----- ----- <u>도기, 문장, 심벌마크</u>, ----- ----- ----- -----.</p> <p>제2조(정의) ----- -----<u>이란</u> 충청북도(이하 “도”----- ----- <u>휘장, 심벌마크</u>, ----- -----.</p> <p>제3조(상징물의 종류) 도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도기</u>: 별표 1 2. <u>문장(철인)· 휘장</u>: 별표 2 3. <u>심벌마크</u>: 별표 3 4. <u>캐릭터</u>: 별표 4 5. <u>도조(道鳥)</u>: 까치 6. <u>도화(道花)</u>: 백목련 7. <u>도목(道木)</u>: 느티나무

제4조(문장·회장) ① (생략)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
2. 도지사 명의로 각종 허가, 면허, 인가증, 도 공공시설, 도유 및 도관리 물자

3. (생략)

③ 회장의 증여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생략)
2. 도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도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자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회장을 증여하는 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문장·회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각호

-----.

1. -----

--- 표창장 및 -----
2. -----

-- 도 관리 -----
--

3. (현행과 같음)

③ -----
각호의 어느 하나-----
--.

1. (현행과 같음)
2. -----

----- 가진 자
3. 그 밖에 -----

④ 제3항에 따라 회장을 -----
--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장 증여대장-----
-----.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도지사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도지사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 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상징물사용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제6조(상징물의 관리 및 홍보 등)

① -----

----- 하며, 상징물의 홍보 및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징물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

각 호-----.

1. ~ 4.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
각 호-----
--.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

----- 이용하고자

----- 별지 제2호서
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 신
청서를 제출하여 -----.

② ----- 따
른 -----

하는 때에는 도지사에게 변경예
정일 30일 전까지 상징물사용변
경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을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
용목적에 위배되거나 도 상징물
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도지사가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①·② (생략)

③ 행사 등에 도 상징물을 활용
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승인
을 받은 때 사용료를 납부 하여
야 하며, 사용료 금액은 도지사
가 정한다.

④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10조(상징물관리위원회설치·

운영) ① 도지사는 상징물을 효
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전문가 등
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

----- 별지 제3호서
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 변경승
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

③ -----
----- 제6조-----

----- 사용승인-----

제9조(사용료)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
----- 납부하여야

④ ----- 각 호-----

1. ~ 4. (현행과 같음)

제10조(브랜드위원회의 설치·운

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 브랜드위원회
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충청북도상징물관리 위원회”
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
2.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상징물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도지사가 임명하는 도 공무원
3.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

1. 상징물 체계 및 각종 브랜드
관리에 관한 사항

2. 효율적인 브랜드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및 도
민참여 방안

3. 국내외 홍보 및 민관 협력 방
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관리실장
2.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 2명 이내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
촉한다.

1. 도 소속 공무원
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상징물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
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도지사는 제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된다.

⑥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하고, 공동으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⑦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관리실장인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이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

-- 제8조에 따른 -----

-----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삭 제>

관련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 중 도기·문장(철인)·휘장·심벌마크 교체 및 충청북도 브랜드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라 「충청북도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브랜드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 등 지급 (안 제10조)

3. 관련조문

- 위원회 출석수당 등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위원회 출석수당(연간) : 130,000원 × 30명 × 연1회 = 3,900천원
- * 출석수당 : 기본수당(2시간 이내) 100천원, 초과수당(2시간 초과) 30천원

나. 추계 결과 : 연간 3,900천원, 2024년부터 향후 5년간 19,500천원 소요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자체재원)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맹은영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세 출	3,900	3,900	3,900	3,900	3,900	19,500
위원회 수당	3,900	3,900	3,900	3,900	3,900	19,500
재원 조달	3,900	3,900	3,900	3,900	3,900	19,5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900	3,900	3,900	3,900	19,500
	지방세	3,900	3,900	3,900	3,900	19,5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구·군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